

병원약사회지 발행규정

제정 2009. 10. 13.

규정 명칭 변경. 개정 2013. 10. 18.

개정 2014. 08. 27.

개정 2015. 10. 3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삭제)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병원약사회 정관 제5조 및 위원회운영규정 제9조제2항 제10호에 의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병원약사회지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회지발행) 본 위원회가 관장하는 병원약사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된다.

- ① 년 4회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발행한다. (개정 15.10.30)
- ② (삭제 15.10.30)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 선임)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상임이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1. 자신의 전공 분야의 학문 활동이 왕성한 자
2. 본 학회의 학문 활동과 학회지 발전에 헌신적인 자

제6조(위원장 및 간사역할) ①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및 간사의 추천, 학회지 발간 업무(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7조(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위원의 교체, 증원, 감원 시에는 위원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은 지역별로 안배하여 선임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5.10.30)

1. 한국병원약사회 회원으로서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자
2. 논문심사 경험이 있는 자
3.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편집경력이 있는 자

제9조(회의소집)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학회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의결)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문서관리)

1. 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2. 위원회의 원고접수 관리,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 취합, 심사결과통보 등을 모두 문서로 하며, 그 문서를 3년간 보관한다.

제12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편집위원회의 기능 (개정 15.10.30)

제13조(임무)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구성,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4조(역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4장 (삭제 15.10.30)

제15조(논문접수) (삭제 15.10.30)

제16조(투고논문의 관리) (삭제 15.10.30)

제5장 투고논문의 심사

제17조(심사의무)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기획논문 및 특별히 청탁한 원고나 외국인의 원고와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은 위원회의 결의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심사위원 위촉) ① 심사위원의 위촉은 위원회의 결의로 편집위원장이 행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2인을 위촉한다. 단 위원회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 위원 1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둘 수 있다. (개정 15.10.30)

③ 심사위원의 위촉은 가급적 전공, 연령, 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⑤ (삭제 15.10.30)

제19조(논문심사)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병원약사회지 논문심사규정에 의한다.

제6장 논문투고의 자격

제20조(논문 투고의 자격) ① 투고원고의 저자(다수인 경우 1명 이상)는 한국병원약사회 회원이어야 한다.

② 비회원의 논문 게재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비논문의 경우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7장 학회지 투고 및 집필규정

제21조(투고규정) 별도의 병원약사회지 투고 및 집필규정에 따른다. (개정 15.10.30)

제22조(집필규정) (삭제 15.10.30)

부 칙 (2009. 10. 13)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13. 10. 18)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집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08. 27)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부터 시행한다.